

## 산업단지 & 경제구역

###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의 관리에 관한 Decree No. 35/2022/ND-CP

- ▶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베트남 정부 Decree No.35/2022/ND-CP(이하 “Decree 35”, 2022. 5. 28. 제정)이 2022. 7. 15부로 시행됩니다.
- ▶ Decree 35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거주, 복지, 공공 시설 용도로 산업단지 부지면적의 최소 2% 이상 확보해야함.
  - Decree 35에 따라 중·소기업, 산업 지원 기업, 스타트업 및 기타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부지 중 최소 5헥타르 또는 산업단지 내 전체 부지의 3% 이상을 할당하고, 해당 기업에 대한 임대료 및 인프라 사용료는 통상 요금의 최대 70%로 제한해야함.
  - 산업단지의 도시-서비스 구역 전환과 관련된 신규 정책에 따라 성 단위 계획에 근거하여 15년 이상 또는 사업기간의 1/2 이상을 활동한 산업단지 중 입주 기업의 2/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구역 전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.

## 은행 & 금융

### 베트남 중앙은행의 인허가 승인 절차와 관련된 신규 Circular

- ▶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2. 6. 30. 상업은행 및 외국은행 베트남지점의 인허가 신청 서류 및 절차에 관한 Circular No.50/2018/TT-NHNN을 수정 및 보완하는 Circular No.06/2022/TT-NHNN(이하 “Circular 06”)을 제정하였습니다.
- ▶ Circular 06에 따라, 외국은행 베트남지점이 주소지를 다른 성으로 이전하는 경우, 중앙은행 총재의 사전 승인을 취득하여야 합니다(현행 규정은 관할 성의 중앙은행 지점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).
- ▶ 대주주의 주식 매입에 대한 신청양식 및 신청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.

### 신용기관 감사 및 감독 절차에 관한 신규 Circular

- ▶ 베트남 중앙은행은 최근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베트남 지점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, 감독 활동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Circular No.08/2022/TT-NHNN(이하 “Circular 08”)을 제정하였습니다.
- ▶ Circular 08에 따라 신용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은 미시적 모니터링 및 거시적 모니터링으로 나뉘어집니다.
  - 신용기관(정책은행 제외), 외국은행 베트남지점 및 외국 신용기관의 베트남 지점은 미시적 모니터링 실시.

- 산업적 중요도가 높은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베트남지점 그룹은 사업 유형 및 지분 구조로 분류하여 거시적 모니터링 실시.

## 세무

### 2022. 7. 1. 전자세금계산서 공식 시행

- Decree No.123/2020/ND-CP(2020. 10. 19. 제정) 및 Circular No.78/2021/TT-BTC(2021. 9. 17. 제정)이 2022. 7. 1.부로 발효하였습니다.
- 이에 따라 재화를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및 사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2022. 7. 1.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, 사용 및 신고와 관련하여 위 Decree 및 Circular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전자세금계산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용도로 인쇄할 수 있으나 인쇄된 전자세금계산서가 거래 또는 지불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단, Decree No.123/2020/ND-CP에 따라, POS 기기를 통해 관할 세무 당국과 전자방식으로 연결되어 생성되는 세금계산서는 인정됩니다.

### 법무법인(유) 베트남팀

정정태 파트너변호사	T. +84-28-3910-7510 E. jtjung@jipyong.com
유동호 선임외국변호사	T. +84-24-6266-1901 E. dhyoo@jipyong.com